

-안녕하세요? 어느 세션인지 알고 오셨죠? 제목이 길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DPR 시행에 따른 WHOIS 도메인 등록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라는 주제로 하기 위해서 저희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 같고요.

네 분이 발표해 주실 거고 제가 앞에 세션에서 계속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화면이 보이지도 않고 해서 지금처럼 발표자 분들이 편하게 계시다 나중에 발표가 끝나면 패널분들이 앞으로 이동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를 우선 보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가 올라와 있는데 유미 법무법인의 전응준 변호사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님.

그다음에 가비아의 김상민 차장님.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신용우 조사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아마 GDPR이나 WHOIS에 대해서는 인지가 된 상태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전응준 변호사님께서도 GDPR과 WHOIS 관련된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이 설계를 하셨던 분이로서 이 이슈로 깊이 들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전응준) 안녕하세요? 전응준입니다.

PPT가 사실 재활용하다 보니까 작년 5월 9일자로 찍혀서, 미처 제가 고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이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WHOIS, 그러니까 우리 세션을 들으시려면 WHOIS가 뭔지, 그다음에 GDPR이 뭔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WHOIS에 대해서 간단히 하면 WHOIS는 기본적으로 도메인 이름, IP주소, 망식별번호 등의 인터넷 자원에 대해서 레지스트라, 등록, 레지스트링은 등록관리기관, 레지스트 오퍼레이트라고도 하는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후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이즈, OR, KR 이런 데에서 도메인네임을 치면 IP주소가 딱 나오는 그런 겁니다.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세계로 오면 약어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약어까지는 아니지만 ICANN이라는 게 있고요. ICANN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gTLD에 관해서, 탑레벨 도메인에 관해서 주소 관리를 하는 기관이고요. 레지스트런트가 여기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주체가 되는 등록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레지스트 오퍼레이트가 주소 관리를 하는 기관이라고 하고, 레지스트라가 우리가 흔히 도메인을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가비아, 후이즈 이게 레지스트라고요.

그다음에 TLD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국가 도메인이고, gTLD가 최상의 도메인이고. IANA는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재미로 후이즈 프라이버시 이슈는 아닌데 보통 후이즈 하면 TLD만 생각하시는데 루티도 있습니다. 닷케이알, 닷컴 자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거 같은데 이게 닷케이알에 대한 후이즈 조회를 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관리자 콘택트가 전 박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닷케이알을 만드신 분 중에서 전 박사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박사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술책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 쪽에서 매니지를 합니다.

여기 보면 크리에이션 네이트가 있는데 닷케이알이 86년에 만들어진 거죠? 이런 정보를 후이즈에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닷컴도 여기서 하면 뭐가 짝 나와요.

그다음에 ccTLD 후이즈라는 것도 조회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전길남 박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서 휴대전화번호가 있었거든요. 여기 사실.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뭘까, 왜냐하면 기사 직원 번호 같지는 않았어요. 이 번호가 전 박사님 번호인 거

같이 지웠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거.

이건 확실히 전 박사님의 지메일이거든요.

이걸 무단적으로 수집하는 업자가 있었고 피싱이나 뭐 도메인을 탈취하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후이즈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OR, KR 같은 거, 똑같이 사람 이메일하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기고 gTLD도 네이버가 닷컴 gTLD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아시면 좋은데 닷컴, 넷, 잡스 이런 건 썬 후이즈라고 해서 등록인에 관한 정보는 레지스트라가 보유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보는 레지스트라가 보유하는 정책을 썬 후이즈라고 하고. 스틱후이즈는 도메인 이름 자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레지스트라가 보유하는 게 스틱후이즈인데 지금 gTLD 정책은 썬에서 스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관리가 아무래도 레지스트라가 더 데이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레지스트라가 망할 때 정보 이전 문제가 생겨서 지금 gTLD에서는 새로 나온 신규 도메인은 다 썬 후이즈이고, 기존에는 썬 후이즈인데 이 정보들을 다 레지스트라 이후 쪽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이즈 프라이버시 이슈를 한번 보면 아까 이렇게 후이즈 예를 보셨다시피 등록, 레지스트란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가 노출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어드민-C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다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고 수집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중요시되고 거기 나온 정보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 후이즈 설계할 때 등록인도 정보를 수집하고 어드민컨택트라는 관리자 이메일 주소도 수집하고 테크, 기술책임자 이메일도 왜 수집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공식 문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인터넷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연락이 안 되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후이즈 조회해서 테크 콘택트를 찾아서 전화하거나 이메일 보내서 너희 서버가 뭔가 안 되더라,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인터넷이 돌아갔거든요.

지금은 상대방 서버가 막혀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게 효용이 떨어진 상태에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어드민컨택트는 수집 안 하려고 하고요. 어드민컨택트하고 등록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드민컨택트는 수집 안 하고, 테크 콘택트는 필요하니까 수집하는데 공개는 제한적으로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슈로는 이렇게 공개되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그러니까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의 관점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줘야 할 정보는 뭘까 고민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공개된 정보를 누가 보게 허용해 줄까?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슈로는 프라이버시 이슈하고도 조금 약간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라이버시는 정보의 정확성도 프라이버시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프라이버시는 자기가 통제를 하되 자기 정보를 정확하게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프라이버시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후이즈 정보가 굉장히 다 틀립니다. 다 해 보면 연락도 안 될 거예요. 후이즈의 정보가 부정확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유지할 건지 이것도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를 알게 되면 거기에 연락해주고 범죄자를 찾고 도메인은 상표권 침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특정 도메인에서 저작권이 복제 전송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할 때 후이즈가 사용되고, 네 번째로는 도메인 양수할 때 후이즈가 중요합니다.

도메인 등록을 해보신 분은 많이 계실 거 같고 살 필요도 있잖아요?

살 때 양도인이 누구인지 먼저 봐야 하거든요. 후이즈에서 양도인을 먼저 체크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한 다음에 접촉을 해야 하거든요.

이럴 때 후이즈 정보가 없으면, 조회를 못하면 약간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할 때 부동산 등기부여 소유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떤 특정 도메인에 우리가 접속을 했을 때 사실 도메인이 악의적인 도메인인지 뭐 진짜인지 약간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 후이즈 해서 이거 누가 등록인이고 관리 책임자인지 확인해 보면 적어도 이 도메인의 진정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볼 때 이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사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좀 자체적으로 신뢰성을 조사해서 상단에 띄워진 것들 대체로 문제가 없는 사이트들이고 개인이 구체화하지는 않는데 사실 의심 나는 도메인에 접근을 할 때 후이즈에 접속해서 신뢰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DPR이라고 이게 2018년 5월 25일에 시행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95년부터 EU에서는 사실 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GDPR이 성립하면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5월 25일 시행전에 있었던 1995년에서도 후이즈 정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슈가 이런 개인정보 체계에서 퍼스널 데이터가 사실 모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고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데이터 컨트롤러, 개인정보 처리자랑 유사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 컨트롤러가 GDP상에는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할 필요는 없어서 더 넓게 데이터 컨트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R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넓고요.

넓은 상태에서 그러한 개인정보, GDPR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 첫 단계는 수집이 될 텐데 수집에서 데이터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후이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인 이름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왜 수집해야 하는지 목적을 확실히 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위법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데이터 처리할 때는 법적인 근거,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를 GD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설정이 되면서 우리도 고민할 부분이 생겼는데

95년 개인정보 디렉티브는 이것만, EU 내에서 설립됐을 때 이것만 갖고 있었다가 GDPR에서는 이거 외에 다른, 정보주체에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GDPR의 적용이라고 해서 GDPR의 지역적 범위를 넓혀버렸습니다.

이건 EU 바깥에서 설립되었더라도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EU 바깥에 설립되었더라도 EU의 정보주체에게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면 GDPR이 적용된다, 이런 글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되니까 보통은 자기의 주권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EU법에서 하는 건 우리랑 큰 관계가 없어요.

없었는데 여기 3조 2항 보면 이게 생기면서 EU 바깥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GDPR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레지스트리도 사실 이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이슈에 우리가 일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GDPR이 처음에 성립됐을 때 GDPR이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보통 이렇게 나오면 낮은 쪽인데 높은 금액을 물게 되어 있어요.

구글 같으면 구글 코리아, 구글 스페인, 어찌고 저찌고 다 합쳐서 이거 매출액의 4%니까 거의 핵폭탄 같은 느낌이 있었죠.

실제로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고 실제로 벌금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고도 있고 이렇게 한 네 단계를 거쳐야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업에서 또 EU 바깥에 있는 국가는 굉장히 긴장했던 겁니

다.

그런데 이렇게 EU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진화되면서 EU WP29라는 워킹파티29 조직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기구들의 연합체 같은 건데요.

이들이 사실 예전부터 후이즈 모델, 자기네 EU법에 어긋난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죠.

GDPR이 초안 나온 건 2014년인가? 되게 옛날에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GDPR 자체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나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 통과하듯이 갑자기 확 되어버렸거든요?

그 상황에서 ICANN도 GDPR의 발효랑 맞춰서 일하려다 워낙 ICANN 글로벌 차원에서 해야 하니까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공식적인 노티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가 2018년 5월 25일에 발효가 되니까 엄청나게 일을 막 하게 됐죠.

아무튼 이렇게 그전부터 사실 후이즈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등록인의 정보를 다 수입하고 제한 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나 도메인 네임 정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때 이미 WP29에서는 계층적 접근이라고 해서 정보를 누구나 다 보여주지 말고 그 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를 보여달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누구나 하면 사법기관이라든지 뭐 보안전문가, 이런 식으로 특정 계층에 대해서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라고 됐죠.

지금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거의 매듭은 지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도메인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후이즈를 조회할 수 없어요.

조회는 하지만 정보를 사실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이 사람의 이름, 이메일, 주소, 이런 걸 전혀 파악할 수 없거든요.

사실 일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이즈라는 게 곰곰히 생각해 보면 도메인은 한번 취득했다고 해서 영원히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소유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을 해줘야 하고 도메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유자로서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후이즈 조회를 통해서 이게 누구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개인정보라는 건 독점적으로 행사한거거든요.

독점권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누구나 볼 수 없고, 누구나 볼 수 없는 그런 식이 되니까 부동산 소유권까지 도메인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처럼 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부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은 완벽한 개인 소유권이기는 하지만 제한이 있거든요.

수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후이즈를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문제, 그걸 그대로 제한 없이 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논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집 단계는 기본적으로 등록인의 정보를 계속 수집하다고 정리가 됐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승인된 건 어드민 콘택트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수집 안 하는 거 같고요.

기술책임자는 옵션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조회, 제3자한테 보여주는 단계에서는 이름, 주소, 이메일, 우리가 관심두고 있는 걸 논퍼블릭 레지스트리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일정 기준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만 접근하게 하자, 그런 사람들은 논퍼블릭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도메인 자체 정보.

즉, 이것의 종료 기관이 언제인지 이 정도만 보여주는 식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어지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샘플이 있는데 보면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라 정보는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는데 사람 정보에 근접한 것들, 레지스트런트 이름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여줍니다.

조직만 살짝 보여주고요.

주소 같은 것도 거의 안 보여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외국은 보면 우편번호에 대한 굉장히 민감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편번호에 민감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개인 정보를 해 보면 외국인들은 우편번호, 집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정보라고 인식하고 함부로 안 보여주려는 게 있는데 우편번호가 갖고 있는 지역적 범위가 우리랑 많이 달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옛날 거여서 어드민 정보가 있는데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콘택트 있잖아요. 아, 테크. 테크는 사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하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보이지 않지만 테크는 익명화된 이메일을 제공하거나 웹상에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막아버리면 못하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쟁점을 정리해 보면 어쨌든 공개 범위를 줄여버리니까 유럽의 개인정보기구는 만족하는데 문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는 이런 법집행 수사기관들, 상표권자들이 좀 문제인데 상표권자하고 보안업체.

관제도 우리는 국정원이 하고 하지만 외국은 관제를 민간이 다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봐야 하는데 접근을 못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은 수집과 공개 범위는 거의 되어 있고요.

지금 논의되는 건 이렇게 후이즈 정보를 봐야 하는 기관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 뭐 이런 게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후이즈 정보를 봐야 할 거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ICANN 유관기관으로부터 접근 권한을 받아서 정보를 볼 수 있을까, 지금 이게 되어 있고.

ICANN은 EPDP라는 절차가 있어요.

항상 PDP를 통해서 마련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신속 PDP 절차를 통해서 프레임 워크를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공개는 페이지1, 1단계에서 정리가 되었고 지금 누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이 이슈는 페이지2라고 해서 2단계에서 논의 중이고 2단계 논의가 이거인데 이런 내용을 현재 ICANN 내에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난 게 없어요, 딱 보면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이번에 보니까 이게 사실 GDPR이 작년 5월 25일에 발효되고 1년이 됐고 지금 보면 EPDP P2, 이게 페이지2 약자 같은데요, 이게 3번하고 6번이 파이널 리포트가 있는데 이게 나와야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4월인 거예요.

아직도 1년 남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세팅이 되려면 1년 남은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혹시 엔지니어 분이 있으시면 관심 가지실 텐데, 결국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ICANN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중간에 ICANN이 게이트웨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래에는 후이즈 정보를 갖고 있는 레지스트라나 혹은 레지스트리의 리캐스터, 질의자가 바로 질의를 해서 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회 절차가 GDPR에 위반되면 레지스트라나 레지스트리가 책임을 져야 해요.

왜냐하면 안 줘야 할 정보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법적인 위반이 되니까.

중간 단계에 자기를 넣어서, 자기가 주겠다는 거죠?

법적으로 GDPR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ICANN이.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를 보면 쿼리가 오면 옛날에는 이게 없이 바로 갔는데 중간에 게이트웨이 끼고 이걸 정보를 조회할 만한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보는 건데 이걸 통해서 받아서 여기에 주고 여기서 DB에서 다시 넘어가는.

기본적으로 ICANN이 정보를 주는 거니까 GDPR의 법적 책임을 ICANN이 인수하겠다, 그런 태도인데요.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레지스트라나 레지스트리의 GDPR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GDPR 해석으로는 ICANN하고 데이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레지스트라, 레지스트리는 공동 컨트롤로 보기 때문에 공동 컨트롤러는 법적인 책임을 다 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 정도 ICANN이 받을 수 있지만 레지스트라, 레지스트리도 GDPR의 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ICANN이 먼저 있으니까 해결을 해주는 그런 상황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네요.

일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GDPR이랑 후이즈에 대한 인트로는 확실하게 되신 거 같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죠?

그럼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아까 전응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 정보를 어떻게 액세스할 건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ICANN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국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복남) 안녕하십니까? 앞에 전응준 변호사가 ICANN 논의 현황은 잘 설명했고 저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반복해서 ICANN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GDPR이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가외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가 고민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저희 사무실 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저희는 책임자를 개인으로 안 두고 이메일 주소는 저희 경영관리실장이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때 제가 입사해서 제가 등록했습니다.

원래 우리 도메인이 좀 길었는데 요새 시대는 짧은 시대야, 로로 끊어.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실 책임자였죠, 보니까.

지금은 바뀌어 있고요.

전자우편 주소도 일종의 개인정보일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GDPR 추세에서는 적어도 ICANN 영역에서는 이걸 수집 안 하겠다, 관리자 영역을 안 하겠다, 이게 합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닷케이알이나 이런 쪽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gTLD가 바뀌고 있는데, 또는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디 가 있어? 이 부분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GDPR 없고 한국 개인정보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후이즈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무슨 상관이나 하는 주장이 있고 아니, 우리도 고민해야 하는데 이걸 다루겠습니다.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EPDP 절차에서 최종 보고서고 이것의 번역본인데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업데이트 버전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파트만 설명하면 1단계, 수집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2단계에서는 어떤 기관이 인가받아서 논퍼블릭 정보를 볼 수 있게 할 거냐, 이 두 단계로 나뉘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월에 차기 후이즈로 나왔던 것에서 다시 업데이트되고 있고 아까 전 변호사님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관리 담당자 정보를 아예 수집도 하지 않고 수집된 정보가 있었을 때 개인 정보, 논퍼블릭 정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게 ICANN의 바뀐 정책인데 이걸 우리나라로 왔을 때 닷케이알이나, 우리나라 ccTLD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GDPR이라는 유럽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이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에 퀘스천 마크를 넣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첫째는 아까 3조 2항 기억나시죠.

GDPR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닷케이알이 아니면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닷케이알의 경우에는 등록된 주소지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죠?

한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국의 주소지를 가진 유럽시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맞잖아요. 한국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유럽시민이 닷케이알을 등록했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는 GDPR 입장에서는 너 유럽 시민을 상대로 했네? 하는 정도의.

물론 실제 비율로 따져 봅시다,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논쟁은 차치하고 이론적으로 GDPR이 확장된 형태의 적용 범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이해 되시죠?

두 번째, 최근에 EU적정성 평가라는 게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뭐냐 하면 워낙 GDPR이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해버리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럽이 유럽 데이터 이전을 함에 있어서 일본 너와는 유럽 영내의 데이터 이전과 동급으로 취급해 줄게 하는 일종의 허가 절차거든요?

그러면 상거래에 있어서 편하게 되겠죠?

물론 GDPR의 룰 자체는 국외로 적용됩니다만 훨씬 더 완화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적정성 평가고 우리나라는 아쉽게 2번에 걸쳐서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행안부가 신청했다가 행안부는 독립 기관이 아니야, 개인정보보호기구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떨어뜨리고 방통위가 부분적정성이라고 해서 망법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조금 옆으로 샌 적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그걸 행안부에서 관련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에서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랬을 때 그 정보통신망법을 관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 그러면 내가 저쪽 행안부 쪽 말고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만 접근성을 다시 받아볼게, 그렇게 한 1년 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장 최근에 작년 말에 그것도 안 되겠어, 너무 부분이야.

2번 떨어졌어요, 저희는 지금.

세 번째 대시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서 통합법으로 다시 할게 하고 이제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멈춰 있죠.

그러니까 통합법은 계속 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법 바뀌는 건 우리나라 사정인데요.

국제 추세로는 적정성 평가 안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EU가 거래 관계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EU를 무시하고 우리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든 하려는 과정으로 갈 거고요.

그럴 때 EU 쪽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나라와 논의 과정에서도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해서 당연히 도메인 관리는 후이즈 정책이 다르네,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GDPR이 멀지 않다, 아직. 그런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닷컴 정책하고 닷케이알 정책이 다르다는 거 쉽게 사용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직 논의 중이어서 그렇지만 닷컴 정책이 확 변해서 공표가 됐어.

다음에 닷케이알 한국 사람들은 나는 왜 정보 내야 해요? 닷컴은 안 내던데 하는 유저들의 요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걸.

도메인 자체가 원래 원 월드 아닙니까? 하나의 세계인데 서로 다른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의 리스크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후이즈 정책이 작년까지는 별로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봤는데요.

내가 볼 때는 강을 건너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말하자면 띄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이 첫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에 워낙 전 변호사님께서 인트로를 잘 소개해주셨으니 제가 따라만 가보자면 이해 관계자 입장에서의 고려가 필요한데요.

가장 말하자면 후이즈 수요자들이 등록업체, 등록업체는 수요자이자 관리자이기도 하죠?

레지스트리, 라 이런 쪽이죠.

분쟁조정기관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 말하자면 특히나 후이즈 정보가 만약에 가려져서 오거나 주소가 프라이버시 이슈와는 별개로 프록시 서비스와 별개로 모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모르는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이 알아내서 연결해줘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도메인의 보유자 하고 만약에 피신청인을 특정해서 왔다, 그러면 그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쟁조정기관이 누구인지 보고 그 사람한테 보내려면 뭔가 절차가 필요하겠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사기업이 맡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던데요? 꽤 우리나라도 활동 영역이 넓습니다.

상표권자도 니즈가 많죠.

그런 정보 수요자들의 입장이 가장 말하자면 물 위에 떠오르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후이즈 정보가 많이 가려지게 되고 수집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고 특별하게 인간의 자유만 된다면 내가 그 인간적 삶을 얻어서 나는 어떤 정보가 필요해, 하는 쪽이니까요.

왜냐하면 반면에 등록된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보호할래, 이제부터.

나 공개 원치 않아, 그로 인해서 어떤 스팸을 받거나 피해받는 거 원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의 조정이나 균형적인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정부는 사실 롤이 2개가 겹쳐 있어요.

아까 말한 수사기관이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자 측면이 꽤 강합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띠고 있고 인터넷주소법에 관할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하자면 자기가 필요한 수요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등록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하는 조정자로서의 입장을 균형 있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제안해 보고요.

그럴 때 어떤 점이 필요하나 법 쪽을 보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는 분리 중이에요.

향후에 통합되더라도 그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요.

그럴 때 수집, 공개의 원칙, 이런 게 나와 있는데 GDPR에서 그것보다 약간 낮... 그러니까 GDPR와 유사한 형태를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고려해야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말하자면 크게 이야기가 아직 안 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주체가 문제제기를 안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수집해서 최소한의 원칙 적용해 볼까요?

정보수집을 최소화했는데 관리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이 그대로 오픈되어야 합니까?

수집되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 보세요! 하고 따져본다고 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극복하기.

GDPR보다 우리는 약한데요? 아니요? 안 약합니다. 그렇게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원칙은 공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공한다는 게 실제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에 나와 있는 제3자에 대한 룰은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만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다 동의받았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등록할 때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없다고 커버되는데 GDPR에서는 하나 더 넣습니다.

그 동의 쓸데없이 받은 거 아니야? 필요없는 동의를 과하게 받은 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강요된 룰이 저는 판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수집원칙과 동일원칙을 믹스시키면 그게 강요된 동의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참고로 독일에서 실제로 독일 강요된 룰까지는 아니었으나 그쪽에서 수집을 안 해버리니까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수집 안 하면 안 돼라고 했더니 독일에서는 ICANN 손 안 들어줬어요.

그 정도로 엄격한 보호를 법원이 행사하게 될 때는 이 법에 대한 고려가 꽤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동의받았다 해서 완전히 우리는 말하자면 무슨 자유 패스를 이용한 것처럼 우리는 해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커뮤니티 내에서의 문제제기가 아직 약하게 있을 뿐이지 향후에 프라이버시 이슈가 강해지고 정보 주체들의, 요새 시민단체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국민이 달라질 수 있다,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게 바람직하나, 뭐 이런 건 다른 거고 일단 현행 법적인 이슈를 그렇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제 논의의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무리의 제목이 출발선인데요.

결국은 한국의 ccTLD 정책에서 후이즈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건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은 그렇다 치자 하더라도.

글로벌도 잘 동향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2단계에 매우 중요한 시즌이 열려 있거든요.

그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도 이렇게 말하자면 제대로 길을 여는 게 필요할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법 관점 GDPR에만 말고 GDPR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와는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법 자체에 대한 검토도 조금 더 되어야만 한다.

동의 우리 받았으니까 안전해라는 그 틀에만 숨어 있기에는 불안해 보인다는 거.

여기 보시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숙의라고 했는데 숙의민주주의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숙의민주주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원전 찬반이나 몇 가지 숙의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약해요.

사실 앞에 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질 때, 정보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후이즈가 아

무리를 법에 따라서 적게 공개하더라도 나한테는 쓸모 있게 해줘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보 주체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떻게 어느 선에서 말하자면 적절한 우리 후이즈 정책을 가져갈 거냐, 글로벌에 부합도 되면서 우리 문화와도 맞는 커뮤니티의 답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나라의 속의 민주주의나 우리나라의 참여 민주주의 형태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도 ICANN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참여 모델이라든가 서양에서의 참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떨어지는 게 현실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뒤쳐질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이런 자리가 출발선이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동안 GDPR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가 고민이었다면 GDPR과 같은 입장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식의 개인정보정책을 수립할 건가 질문을 던지신 거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으로는 등록대행업자로서의 가비아에서 등록인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가비아의 김상민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안녕하세요? 가비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가비아는 등록대행 업무를 하면서 등록인들의 피해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세션에서 계속 언급되는 후이즈입니다.

예를 들어 가비아 닷컴을 등록했을 때 후이즈 정보를 조회하면...

첫 번째는 등록일자, 뭐 이런 게 있고 네임서버 정보를 통해서 어느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정보상에 여러 가지 콘택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뭐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메일까지 해서 모든 정보수집하는데 다행히 가비아 회사에서 등록하면...

일반 개인이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주소도 집주소를 입력할 수밖에 없고 집전화도 없는 경우 많이 있죠? 핸드폰을 입력할 수밖에 없는데 후이즈를 통해서 이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메인이 필요해서 등록했을 뿐인데 작성한 정보들이 후이즈 검색을 통해서 전 세계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도메인 후이즈 검색을 했을 때 해당 정보를 보여주고 거기 키워드 광고라든가 배너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업체들도 있고요.

중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주기적으로 수집합니다.

모든 정보가 축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닷컴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면 저 이메일 주소로 모든 도메인...

돈을 내면 저 돈의 목록들하고 각각 도메인에 대한 히스토리까지 다 수집,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도메인 등록을 하면 도메인 등록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자한테 도메인이 만료되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메일 같은 경우에는 영문인데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비아를 사칭해서 실제로 연장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인이 해당 이메일 열어보고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면.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도메인 등록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합병 예정인 회사에 신제품 출시 전에 도메인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부정확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강화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록자한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등록자가 감시를 해서 도메인을 정지, 말소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자가 자기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이름으로 연 3달러에서 8달러 별도로 지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업체에서 이야기 하는 장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스팸이나 전화수신 차단, 경쟁사의 마케팅 조사를 차단할 수 있다, 홍보를 하면서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도메인 등록자가 개인적으로 노출을 꺼려 하고 불편해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있어서 이 서비스를 먼저 도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ICANN에서는 도메인 등록자가 실제 등록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09년도 버전이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것과 정책과 괴리가 있어서 13년도 버전에서 프록시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프라이버시 서비스는 계약서 그대로 가면 말이 어렵습니다.

등록명이 도메인 이름 보유자로서의 자격으로 수익적 사용자에게 등록되지만 등록 데이터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에 있는 등록명 보유자의 연락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PP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한국말로 해도 잘 안 되는데.

말은 좀 어려운데요.

ABC마트 닷컴이라는 도메인 등록자가 제공한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등록자의 회사 이름은 ABC마트고요.

내용은 뭐 홍길동, 하단에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주소로 대체가 됩니다.

저 이메일로 메일을 전송하면 등록자의 실제 이메일로 가고요.

스팸 차단이나 이런 기능이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프록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자 이름 자체를 노출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주로 하는데 자회사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요.

업체 이름으로 대신 등록하고 도메인 등록자한테는 도메인 사용을 라이선스 개념, 실제로 후이즈상에서 봤을 때는 프록시 서비스가 되는 거고 실제 사용자는 도메인의 실제 등록자는 단순히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계약서인데 프라이버시 앤드 프록시 레지스트레이션 의무가 됐고요.

서비스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설명, 제3자 권리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2.5항 보면 에스스로 요구가 되는데 이걸 도메인 등록을 하게 되면 도메인 등록 정보를 ICANN이 지정한 에스스로 업체에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백업을 하더라도 실제 등록자 정보가 아니라 프록시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록시 정보가 아니라 실재를 하라는 거고요.

여기 계약서 13년도 계약서는 당초에는 17년도이거나 아니면 프록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를 준비를 중에 있는데 도입되는 시기에 마칩서, 그게 나오면 대체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GDPR 영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거나 그런 거고 현재 이 내용도 홈페이지 내에서는 유효기간이 2021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건 앞에서는 프라이버스 프록시 서비스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용자 서비스를 인정하는 거라고 보면 지금 2016년도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민간의 업체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 이런 부분은 앞에 내용과 비슷하고 여기 내용을 기반해서 ICANN에서 정책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작년부터 2018년 어버이날에 GDPR이 갑자기

이슈가 되고 하면서 도메인 등록 정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 정책이 나오면서 임시 정보들 다 비공개처리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고 지금 씬 후이즈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라가 하는데 국가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정보 말고 하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하신 대로 특하우스, 독일 업체인데 아무 정보도 조회할 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시 정책에 의해서 등록자 이름, 옵션으로 해서 등록자 이름 주, 국가 정보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제한된 정보만 조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후이즈 정보 정책의 바뀔 것으로 인해서 프라이버시나 프록시 서비스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후이즈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좀 많이 사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GDPR이나 정책은 같이 글로벌을 흐름에 맞춰서 가는데 KR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없는 상태죠.

KR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정보여부를 옵션으로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비공개하는 영역이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가릴 수 있고요.

법이나 개인 모두 조회를 하면 책임자의 이름,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 가비아의 프록시 서비스와 접목하고 있고요.

이건 정책이 변경되는 않는 한 뭐 계속적으로 아마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프록시, 현재 등록된 프라이버시나 프록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에 후이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사업장은 일부 정보 비공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정보 공개,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에 대한 건 개인이나 정부나 구분 없고.

현재 도입을 하는 배경이나 취지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후이즈 정보 공개는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할 부분인지 논의가 필요할 거고 정부와 맞춰서 프라이버시 프록시 서비스를 마찬가지로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요는 그동안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걸 법제화하는 자리에 올릴 건가 하는 질문을 올리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표로 입법조사처의 신용우 조사관님께서 후이즈 도메인 등록인의 개인정보 보호 발표를 마치시고 패널분들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입법조사처의 신용우라고 합니다.

앞에서 워낙 전문가분들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입법적인 쟁점들이 있는지만 설명드리고 귀한 토론 자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300명이 계시죠? 그분들이 각각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분야별로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올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이 쓰신 글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 국제적인 성격과 EU는 물론 국가의 집합이지만 법률 충돌 지점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원래 최근 이슈들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각종 정부와 부딪히면서 오히려 정부보다 힘이 거대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최근 독일 판결 하면 각 정부가 ICANN이라는 규칙을 압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그런 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는 엄격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작년 11월에, 작년에 계속 4차산업혁명 회의라든가 국회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논의가

반영되고 GDPR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11월에 발의되고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개정 논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6월로 발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굳이 이걸 나눌 필요 없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통합하자는 게 주가 있고요.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치 정보의 경우에는 추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포괄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개인신용정보라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겠다, 성격을 달리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내용을 밑에 보면 우리나라는 명확치 않지만 식별력을 없앤 다음에 통계자료나 뭐 기록 보존을 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주셨지만 수집 목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딱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합리적으로 된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사실 워킹29에서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로 초기의 범위를 확장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ICANN이든 뭐 그런 단계에서 어떤 범위로 공개할 수 있는지, 처리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았는데 법 규제가 되는 개인정보가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처리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U적정성 평가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높는데 가장 문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목적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GDPR은 양립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집한 목적과 양립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동의 없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이걸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개정안에도 합리적인 문제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개정을 하고 향후 ICANN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 목적에 대해서 그걸 범위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법에도 개인정보를 최소 수집해야 한다는 조항이 16조에 있는데요.

원래 최소한을 수집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수집한 경우에 처벌이 되지는 않고, 만약에 거부했을 때, 수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GDP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이런 원칙들을 유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처리 기본 원칙에 대해서 엄격하다고 볼 수 있죠.

최소수집 원칙에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주소법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주소법 안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고 거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여러 조항들이 다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재 동의가 되어 있어서 법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동의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이걸 면책시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까 비교형량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합리적 관련 목적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정보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둘 간의 이익에 대해서 비교형량을 진행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개인정보가

처리,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요청권자, 만약에 후이즈상 개인정보를 공개를 제한할 경우에 누가누가 그걸 요청했을 때 제공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처리에 관한 여러 기관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 집행, 침해, 보안 관련된 것들 접근이 가능하도록 아마 ICANN에서 이런 최종적인 규정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사실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통계나 학술연구 목적으로도 수집한 경우가 있을 텐데 ICANN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이걸 저희가 고민을 할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분쟁조정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분쟁조정이 있는 경우가 필요하고.

내 개인정보를 누가 조회했지라는 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일종의 침해를 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매번 어떤 조회가 있을 때마다.

실제 분쟁이 있을 때는 통비법처럼 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그냥 조회만 하는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등록인이 레지스트리 같은 데 요청을 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조회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향후 ICANN의 프로그램 방향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 GDPR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보호,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보호된다고 할 텐데요.

결국 기술이 그 법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시스템, 법 제도가 거기에 맞춰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시간이 원래 3시에 끝나야 하는 거라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토론이 되면 15분 브레이크를 활용해서라도 논의가 진행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노트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패널분들을 지목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냥 질문하시면 패널분이 대답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학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학습하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 같은데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플로어) 저는 연대 경영학과 학생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에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것 중 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동의라는 게 정확히 앞으로, 물론 아까 윤복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전동의 하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물론 강하지만 사전동의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제3자에게 이게 양도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GDPR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사전동의 방향과 조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GDPR과 같이 우리나라의 제도가 바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

-(전응준) 글썬, 개인정보 전반에 대해서는 윤 변호사님이 하셔야 하는데 후이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일부 견해가 GDPR 6조 1항 A가 동의고요.

B가 계약 이행이 필요한 데에서 동의 업체, G.

B.

F항이 데이터 컨트롤로의 정당한 게 있을 때, 크게 봐서 F까지 있는데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A, B, F 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이즈 이슈에서 일부 견해는 여전히 동의를 써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건을 처리하면서 세계 주요 로펌들의 의견서를 받는데 일부 로펌의 의견서가 여전히 베이스로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일부 로펌이나 일부 의견은 F항, 6조 1항 F항을 써서.

왜냐하면 데이터 컨트롤로 ICANN하고 레지스트라, 레지스트리가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그걸 공개할 그런 적법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보 주체인 등록인보다 그것이 우월할 때는 계속적으로 후이즈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거기에서도 두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6조 1항 F를 쓰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걸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어요.

데이터 컨트롤로의 적법한 것과 정보주체의 이익이 누가 더 우월한지 사실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 또 일부 국가는 단순 이익형량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데이터컨트롤러의 이익이 현저하게 우월할 때만 동의 없이 한다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현저한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어려운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후이즈에서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사회자) 뒤에.

-

-(플로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운입니다. 먼저 후이즈 쪽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는 감시 기관으로서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쪽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본 관점은 조금 다르거든요.

후이즈 정보, 아까 처음에 발표해 주신 발표자께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후이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운영자를 특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만큼 정부가 부정확해 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15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후이즈 정보를 거의 쓸 수 없고요.

수사기관, 정부기관이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후이즈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보호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 하나를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프라이버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로 해서 레지스트리 정보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 유료로.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불법 온라인 도박 업자들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을 찾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저희 관점에서는 공조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서비스 안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협약이 맺어져서 서비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할 때는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상민) 일단 프록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용도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요청하면 프록시 서비스를 해제를 시켜요.

그러면 실제 정보가 공개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등록 정보 자체가 다 가짜 정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가져오시면 그거에 대하여는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응준) 윤 변호사님이 하실 수도 있으면서...

정확성 문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후이즈 단독 정보 갖고 조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걸 사용할 때는 보조적으로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특정 이메일이 어떤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이 여기서 쓰이고 여기서 쓰이고 이런 것이 애가 한 패구나,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정말 정확성이 담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구조 개편을 통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확성을 어떻게 강제할 거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보여주면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가는 필연적인 거 같아요.

지금 규정상으로는 닷케이알 같은 경우에도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면 말소를 할 수 있어요.

말소를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담보할 건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아마 닷케이알 초기에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 서류 다 내고 그거 다 검증해서 확인된 경우만 등록을 해줬어요. 그러다 점점 인터넷 등록 수요가 늘어나고.

그때는 등록자가 많지 않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됐죠.

등록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부정확한 정보가 생기게 되 거 같습니다.

질문.

-(플로어) 아까 답변 중에서 동의 혹은 정당, 이게 논란인데 동의라면 동의라는 건 제가 동의를 안 해도 될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동의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내가 이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거기에 동의를 안 해도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 거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하나고.

정당의 이익 부분은 의문스러운 게 레지스트라 정당한 이익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수사기관이나 지적재산권자가 보고 싶다는 그게 있을 수 있는데 등록업체가 이걸 공개해야 한다는 정당한 게 뭔지 그건 모호하다, 그건 등록업체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걸 등록업체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사회자) 코멘트이신 건가요?

-(플로어) 질문입니다.

-(전응준) 일단 A 동의에 대해서는 GDPR에도 계약상 필수불가결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 동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후이즈 정보를 수집할 때 이 정보를 수집해야 뭐 인터넷 등록이라든가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는 걸 ICANN의 역할인 거 같아요.

ICANN은 그런 동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답은 안 주는 거죠.

그다음에 후이즈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F항을 쓰면 소위 사법기관 같은 게 당연히 이익이 있겠지만 왜 보여주느냐, 이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형태로 논의되는 건 6조 1항 B 계약의 필수인 것을 넣어서 등록이나 레지스트라, 대행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그거에 필요한 서비스에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논리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F도 쓰이지만, 정당한 이익으로도 처리하지만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조항을 써서 이런 구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아까 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큰 문제제기를 하면 사실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후이즈 체계가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사회자)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시 2분인데요.

혹시 코멘트, 질문인데 꼭 해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하나 받고 세션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세션 지금 질문 안 나왔고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셔도 좋을 거 같고 GDPR이라고 하는 게 이미 시행되었는데 저희 한국에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충분히 큰 거 같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본인의 자리에서 참여해야 할 것이 있거나 이슈를 제기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분 종료)